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9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2년 09월 28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과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현황

구 분	본청					의회		직속기관(2)		사업소(1)		읍·면		
	국	실	관	과	담당	과	담당	과	담당	기구	담당	읍	면	담당
당초	2	1	-	15	89	1	1	6	32	2	4	1	7	38
조정	2	1	1	16	88	1	2	7	32	1	4	1	7	43
변경	-	-	+1	+1	△1	-	+1	+1	-	△1	-	-	-	+5

- 부서신설(3) : 정책담당관, 회계과(재무과 분리), 축산농기계과
- 부서통합(1) : 교육체육과(체육) + 올림픽유산과 ⇨ 올림픽체육과
- 부서분리(1) : 재무과 ⇨ 세정과 / 회계과
- 부서폐지(1) : 농기계임대사업소

나. 과 단위 명칭 조정(10)

올림픽유산과	⇨	올림픽체육과	민원과	⇨	민원토지과
재무과(분리)	⇨	세정과/회계과	교육체육과	⇨	인재육성과
문화관광과	⇨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	경제과
환경위생과	⇨	환경과	진료지원과	⇨	의료지원과
농축산과	⇨	농정과	유통산업과	⇨	농산물유통과

다. 기구(본청) 직제 순서 조정

- 기획실
- 정책담당관 군수직속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올림픽체육과 → 복지정책과 → 가족복지과
→ 민원토지과 → 세정과 → 회계과 → 인재육성과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허가과 → 경제과 → 환경과 → 산림과
→ 안전교통과 → 건설과 → 도시과

라. 담당신설(17)

기획실(1)	⇨	공모사업	정책담당관(3)	⇨	총괄정책,사업발굴, 인구정책
회계과(1)	⇨	청사차량	인재육성과(1)	⇨	청소년교육
허가과(1)	⇨	공공건축	경제과(1)	⇨	에너지
안전교통과(1)	⇨	중대재해	농정과(1)	⇨	귀농귀촌
축산농기계과(1)	⇨	농업기계	군의회(1)	⇨	의정
면(5)	⇨	건설환경			

마. 담당 명칭변경(20)

부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행정과	자치행정	행정	
올림픽체육과 (前 올림픽유산과)	평화기획	올림픽정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복지정책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	아동보육	

민원토지과 (前 민원과)	민원 행정	민원	
인재육성과 (前 교육체육과)	교육지원	인재육성	
	평생학습	평생교육	
허가과	건축	건축허가	
	산지관리	산지허가	
환경과 (前 환경위생과)	기후변화	환경관리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정신건강	
농정과 (前 농업축산과)	농업정책	농촌행정	
	농촌산업	농식품산업	
	농촌활력	농촌인력	
농산물유통과 (前 유통산업과)	친환경농업	친환경수출	
	수출지원		
축산농기계과	내수면	축수산환경	
	방역위생	동물방역	
읍·면	건설	건설환경	
	산업개발	산업	
	찾아가는보건복지	찾아가는복지	

바. 담당폐지(11)

부서	담당(폐지)	비고
기획실(2)	혁신통계, 서울사무소	
올림픽체육과(2)	기념사업, 청소년올림픽	
관광문화과(1)	문화시설	
허가과(1)	허가행정	
경제과(2)	기업유치, 전략산업	
산림과(1)	산림복지	
보건정책과(1)	감염병대응	
건강증진과(1)	건강생활실천	

사. 담당이관(16)

담당 이관	비고
· 가족복지과(아동청소년/분리 ⇨ 아동보육, <u>청소년교육</u>) → 인재육성과(1)	
· 세정과(계약, 경리, 재산관리) → 회계과(3)	
· 인재육성과(체육진행,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 올림픽체육과(3)	
· 환경과(위생) → 보건정책과(1)	
· 농정과(축산정책, 축수산환경, 동물방역) → 축산농기계과(3)	
· 농정과(원예특작, 농산지원) → 농산물유통과(2)	
· 농산물유통과(농촌개발, 농촌협약, 농식품산업) → 농정과(3)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과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현행 본청 2국 1실 15과 89담당을 2국 1실 1관 16과 88담당으로,

의회 1과 1담당을 1과 2담당으로,

직속기관 6과 32담당에서 7과 32담당으로,

사업소 2기구 4담당에서 1기구 4담당으로,

읍·면 1읍 7면 38담당에서 1읍 7면 43담당으로,

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이며,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관 신설, 3과 신설, 과 분리·통합 및 직제 조정, 1사업소 폐지 17담당 신설, 11담당 폐지, 16담당 이관 등 조직 개편이 방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소관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체계적 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